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인자가 면제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19.11.26)됨에 따른 구체적인 면제 방법 마련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현행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제에 품질등급제를 추가하는 상위법령이 개정('19.11.26)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 입증자료 제출)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제13조를 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9조에 따른 매출·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4.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영 제19조에 따른 매출·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2조제2항"을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으로,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 제9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 소재지"를 "하역항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 소재지"를 "하역항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 소재지"를 "하역항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을 "부분 및 같은 조 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이란 각각”으로, “품질기준을”을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와 품질표시 결과로 별표 7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을 매년 5월26일과 11월25일까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ㆍ제조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표시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품질등급을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품질등급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입자ㆍ제조자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1. 수입자: 수입유효기간

2. 제조자: 상반기 또는 하반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 판정, 검증위원회 구성의 세부 절

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40일 이내에 해당”을 “해당”으로, “별지 제14호의8서식”을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본문 중 “폐자원에너지센터는”을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로, “등을 적은 계획서를”을 “등의 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의6의 제목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을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및 품질등급 표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착하는”을 “부착하거나 품질명세서 사본을 제출하는”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화학물질 함유량”을 “함유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을 공개한 경우에는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의16서식의 품질등급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등급서를 부착하거나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 품질등급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9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0일 이내에 해당”을 “해당”으로,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로 한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제20조의1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의5제7항 또는 제8항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제2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확인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2”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을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바목1) 중 “보관창고로서 최소 2일분 이상의 제조용량 또는 사용용량의 보관이 가능할 것”을 “보관창고이거나 구조물(사일로, 지하피트 등)일 것”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열 발산이 잘 되도록 관리하고, 고형연료제품 보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미의 크기를 감소시켜 화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 제9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총수입액)을 기재포장재재만 해당합니다”를 “총수입액)을 기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

· 포장재재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종류 및 구성비율”로 하며, 같은 서식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번호 : 제 호

2.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 (생년월일:)

4.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제조신고의 경우(제조시설 소재지)

5.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일반 고형연료제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6.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 종류 및 구성비율 :

7.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연간 예상 제조량(톤/년)	연간 가동일수(일/년)	일일 가동시간(시간/일)

※ 제조신고의 경우

8. 그 밖의 참고사항 :
※ 수입신고의 경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물량 및 검사결과서 발급번호, 제조국 및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주소, 수입유효기간, 예상도착항, 국내 수요처 등)
※ 제조신고의 경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결과서 발급번호, 수요처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별지 제14호의6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시행령”을 각각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7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11서식 중 “(톤/일)”을 “(톤/년)”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13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16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가. 품질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단위</th><th colspan="2">성형</th><th colspan="2">비성형</th></tr>
<tr><td colspan="2" rowspan="2">모양 및 크기</td><td rowspan="2">mm</td><td>직경</td><td>50 이하</td><td>가로</td><td>50 이하</td></tr>
<tr><td>길이</td><td>100 이하</td><td>세로</td><td>50 이하</td></tr>
<tr><td colspan="2">수분</td><td>wt.%</td><td colspan="2">15 이하</td><td colspan="2">25 이하</td></tr>
<tr><td colspan="2">저위발열량</td><td>㎉/kg</td><td colspan="4">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td></tr>
<tr><td colspan="2">회분</td><td>wt.%</td><td colspan="4">20 이하</td></tr>
<tr><td colspan="2">염소</td><td>wt.%</td><td colspan="4">2.0 이하</td></tr>
<tr><td colspan="2">황분</td><td>wt.%</td><td colspan="4">0.6 이하</td></tr>
<tr><td rowspan="4">금속
성분</td><td>수은(Hg)</td><td rowspan="4">mg/kg</td><td colspan="4">1.0 이하</td></tr>
<tr><td>카드뮴(Cd)</td><td colspan="4">5.0 이하</td></tr>
<tr><td>납(Pb)</td><td colspan="4">150 이하</td></tr>
<tr><td>비소(As)</td><td colspan="4">13.0 이하</td></tr>
</table>

※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3. 비성형제품으로서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mm, 세로 120mm 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0호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폐타이어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황분 함유량은 2.0wt.% 이하로 한다.

나. 품질항목별 평가점수

품질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	㎉/㎏	≥6,000 (≥6,150)	≥5,000 (≥5,150)	≥3,500 (≥3,650)
염소	wt.%	≤0.5	≤1	≤2
수은	mg/kg	≤0.2	≤0.5	≤1
황분 (폐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wt.%	≤0.2 (≤1.6)	≤0.4 (≤1.8)	≤0.6 (≤2.0)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가. 품질기준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회분		wt.%	15 이하			
염소		wt.%	0.5 이하			
황분		wt.%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95 이상			
금속 성분	수은(Hg)	mg/kg	0.6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00 이하			
	비소(As)		5.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나. 품질항목별 평가점수

품질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	㎉/kg	≥3,600 (≥3,750)	≥3,300 (≥3,450)	≥3,000 (≥3,150)
염소	wt.%	≤0.1	≤0.3	≤0.5
수은	mg/kg	≤0.1	≤0.3	≤0.6
황분	wt.%	≤0.05	≤0.1	≤0.6

3.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 방법

가. 품질등급기준

판정구분	품질등급기준
최우수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10점 이상
우수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8점 이상 10점 미만
양호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4점 이상 8점 미만

나. 수입자에 대한 품질등급 구분 방법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제2호나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1)에 따른 품질항목별 평가점수를 더하여 가목의 품질등급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3)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에서 품질등급 의견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품질항목별 평가점수 산정에 반영하고, 품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다. 제조자에 대한 품질등급 판정 방법

1)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항목별 평가점수는 제조시설에서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시한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결과를 평균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제2호나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1)에 따른 품질항목별 평가점수를 더하

여 가목의 품질등급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3)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에서 품질등급 의견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품질항목별 평가점수 산정에 반영하고, 품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4) 제조신고,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품질등급 판정하려는 기간에 실시한 품질검사 또는 품질표시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검사 중에서 최근에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품질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품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

(제20조의11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하여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금지명령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10 제2항			
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 고	금지명령 1개월	금지명령 3개월
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 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확인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폐기물 부담금 제외 대상 산출 명세	① 품목명	② 출고·수입량 (껌의 경우 판매가액·수입가액)	③ 출고·수입단위 (kg,L,개,원)	④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매출액(원)·총수입액(달러)

⑤ 제외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아래의 품목명을 적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명 : (살충제,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일반용플라스틱제품), (건축용플라스틱제품)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량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의 판매액(수입은 수입액)을 적습니다.(플라스틱제품 중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사유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제품의 출고·수입 단위를 적습니다.

④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제품(일반용, 건축용)은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매출액(수입은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수입액(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를 기재합니다.(플라스틱제품 중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사유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각 목에 명기된 부과 제외 사유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②연간 총매출액 (백만원)	③연간 총수입액 (백만원)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자료제출 내 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매출・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매출・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4.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매출・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 종류 및 재질란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종이팩, 유리병)
② 해당업체의 전년도 연간총매출액(총수입액)을 기재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연장: 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	①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 및 제조국·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가. 고형연료제품 종류 일반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나. 고형연료제품 제조국: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업체:
	②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 및 구성비율)
	③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
	④ 고형연료제품의 보관형태
	⑤ 검사신청물량(수입의 경우)
	⑥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항목

일반 고형연료제품 전항목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전항목	수분 항목	기타 항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금액

작 성 방 법

①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조국 및 제조업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③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합니다)나 제조시설(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바로 품질검사 시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위치한 장소를 적습니다.

④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형태(예: 창고보관, 포장 등)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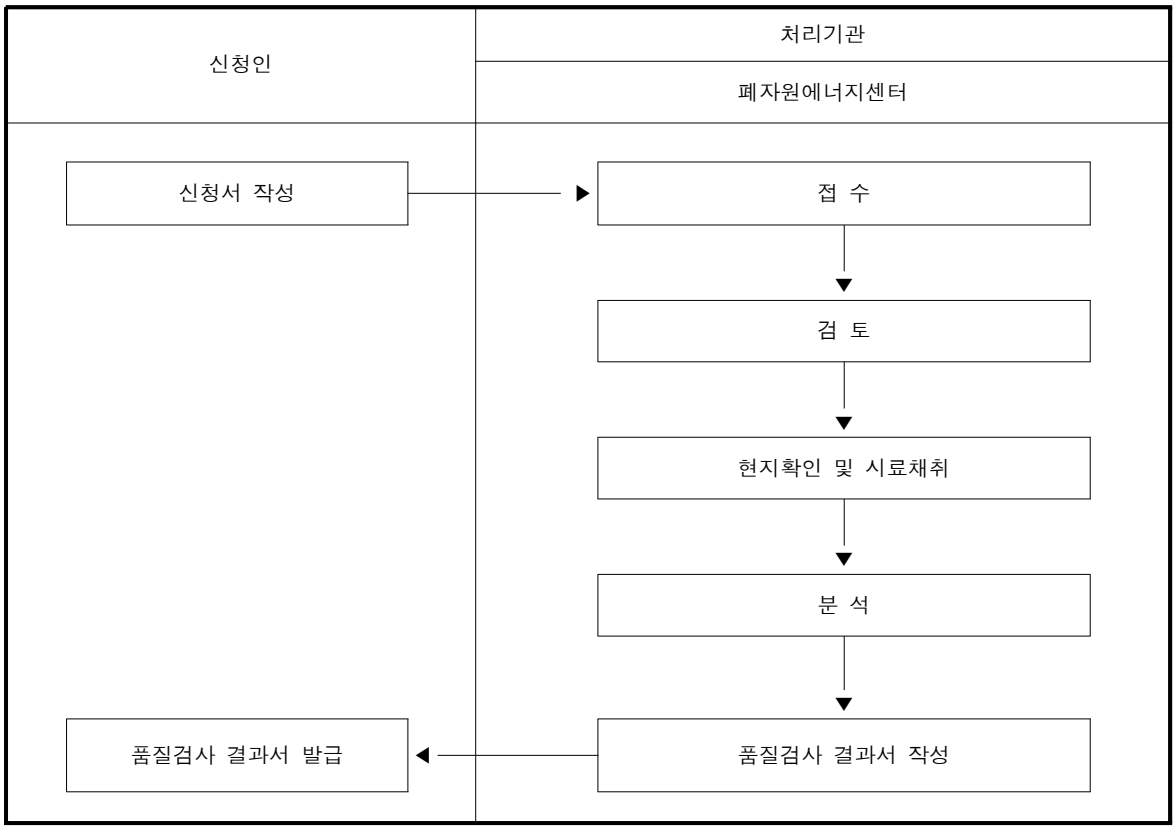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

발급번호 제 호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	①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 및 검사물량 가.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 나. 고형연료제품의 검사물량
	②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 및 구성비율)
	③ 제조국·제조업체(수입의 경우)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국: 나. 고형연료제품 제조업체:
	④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 장소 및 그 밖의 참고사항

검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검사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 명세서

필수 기재항목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제조 신고번호							
	제조국·제조업체 (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종류	□ 일반 고형연료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성형 □ 비성형					
	원재료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혼합폐기물						
	모양 및 크기	직경/가로	길이/세로					
		mm	mm					
	수분 및 저위발열량	수분	저위발열량					
		wt.%	kcal/kg					
	원소 성분 등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회분	염소(Cl)	황분(S)				
		%	%	%				
		바이오매스	%					
	금속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수은(Hg)	카드뮴(Cd)	납(Pb)	비소(As)	크로뮴(Cr)		
		mg/kg	mg/kg	mg/kg	mg/kg	mg/kg		
		안티몬 (Sb)	코발트 (Co)	구리 (Cu)	망간 (Mn)	니켈 (Ni)	탈륨 (Tl)	바나듐 (V)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기타:						

선택 기재항목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원재료의 성상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비닐 및 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기 타
		%	%	%	%	%	%
	물리적 성상	겉보기 밀도	휘발분	회 용융 온도			
		g/㎤	%	℃			
	원소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실시한 시험의 고형연료제품 품질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장 직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내역	① [ ] 신규 설치 시설 [ ] 연료 추가 또는 변경 시설	
	② 시설 종류	③ 사용 제품
	④ 전체 시설 용량(톤/년)	⑤ 고형연료제품 사용 계획량(톤/년)
	⑥ 일일 가동 시간(시간/일)	⑦ 연간 가동 일수(일/년)
	⑧ 설치(연료 추가 또는 변경) 예정일	⑨ 기타 사용 연료 종류 및 사용량(톤/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①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체크합니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종류를 적습니다.
③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제품명 및 종류를 적습니다.
④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시설 용량을 적습니다.(기타 연료와 혼합 연소하는 경우에는 전체 용량을 적고, 연소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적습니다)
⑤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사용 계획량을 적습니다.
⑥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일일 가동 계획시간을 적습니다.
⑦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연간 가동 계획일수를 적습니다.
⑧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 또는 연료 추가・변경 예정일을 적습니다.
⑨ 기타 연료와 혼합 연소하는 경우 기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톤/년)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서식]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연장: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대상 시설	종류	제조시설		사용시설	
		일반 고형연료제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일반 고형연료제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허가일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완공일	년 월 일			
	제조·사용 용량	(톤/년)	가동시간	(시간/일)	
			연간가동일수	(일)	
	최근 정기검사일 (검사번호)	년 월 일 (제 호)			
	이번 정기검사 희망일	년 월 일			
	변경공사 예정유무	[ ] 유 (완공 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 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합니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합니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210㎜×297㎜[백상지 80g/㎡]

<전문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서식]

발급번호 제 호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 연월일				
다음 정기검사 기간				
검사 장소				
검사대상 시설 제원(諸元)				
제조·사용 용량	톤/년		가동시간	(시간/일)
			연간가동일수	(일)
형식			가동방식	
모델번호			제조사	
제조·사용 연료	(일반 고형연료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공정				
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특기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변경검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6서식]

발급번호 제 호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제조 신고번호			
	제조국·제조업체 (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종류	일반 고형연료제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원재료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혼합폐기물			
	품질등급	□ 최우수 □ 우수 □ 양호			
	품질항목	저위발열량 (㎉/㎏)	염소 (wt.%)	수은 (㎎/㎏)	황분 (wt.%)
	품질등급 유효기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서식]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의견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제조 신고번호			
	제조국·제조업체 (수입품의 경우)			
신청내용	종류	일반 고형연료제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상세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표시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 입증자료 제출)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신 설>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

	증)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9조에 따른 매출・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4.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영 제19조에 따른 매출・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

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 별지 제9호의3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 하역항구----------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 하역항구---------- 제출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역항구----------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 ① ---------- 부분 및 같은 조 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란 각각 --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을 ----------.
<신 설>	②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와 품질표시 결과로 별표 7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 설>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을 매년 5월26일과 11월25일까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제조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표시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품질

	등급을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품질등급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입자·제조자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1. 수입자: 수입유효기간 2. 제조자: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 판정, 검증위원회 구성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40일 이내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 ② ---------- 해당 ----

에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 ---------- 2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 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계획서를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등) ①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 등의 계획을 -----. ---------- 그렇지

지 아니하다.	않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 및 품질등급 표시 방법 등) ① ---------- 부착하거나 품질명세서 사본을 제출하는 -- 표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및 화학물질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	③ ---------- 함유량 --------

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을 공개한 경우에는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의16서식의 품질등급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 설>	⑥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등급서를 부착하거나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 품질등급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 1. ---------- 3개월 --------- 2. ---------- 3개월 -------- 3. ---------- 가. ---------- 3개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해당 ----------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

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5조의5제7항 또는 제8항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확인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의2. (생 략) 7. 제20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 2014년 1월 1일 8. (생 략)	---------- 해야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및 품질등급기준: ---------- 8. (현행과 같음)